

정 비 명 령 서						
제 호			No.			
운전자	성 명		면허증	[] 제1종	[] 대형 [] 소형	[] 보통 [] 특수
				[] 제2종	[] 보통 [] 원자	[] 소형 [] 건설기계
차 량	()시 ()도 [] 사업용 [] 비사업용 [] 관 [] 자 제 호	차 종				
		사용주				
교부일시			교부장소			
위의 차량은 「도로교통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정비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·도경찰청장(경찰서장)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경찰서 계급 성명 (서명 또는 인)						
유 의 사 항						
1. 필요한 정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41조제3항에 따라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자동차의 사용을 정지하게 됩니다. 2. 정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면 같은 법 제153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. 3. 정비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			
정 비 불 량 사 항						
[] 제동장치 [] 조향장치 [] 주행장치 [] 조명 [] 매연 [] 도장 [] 머플러 [] 기타 ()						
위 사실을 인정함 년 월 일 운전자 (서명 또는 인)						
검인 (인)						